

대구지방법원 2024. 11. 26 선고 2024가단12437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0. 22.

판결 선고 2024. 11. 26.

주 문

-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. 11. 16. 체결된 상속재산
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
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2. 5. 24. 접수 제605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
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C에 대하여 '76,000,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'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. C는 2021. 11. 16.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피고가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(이하 '이 사건 협의분할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.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가.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, 여기에서 채권자가 '취소원인을 안 날'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,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,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(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6다46483 판결 참조).

나.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, 갑 제3,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2022. 6.경 대구지방법원 2022카단3321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, 2022. 6. 16.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사정이 그러하다면, 원고로서는 위 가처분 신청을 할 당시인 2022. 6.경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에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,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. 5. 13.에야 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이 사건 소는 그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박상인

별지